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

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「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354호, 2020. 12. 1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9조제3항 중 “공인인증서”는 “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”로, “공인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으로부터”는 “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”로 함(안 제9조제3항)

3.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공인인증서”는 “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”로, “공인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으로부터”는 “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 (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<u>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시 사용한 성명 및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.</u> ④ ~ ⑤ (생략)	제9조 (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</u> ----- ----- <u>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</u> ----- -----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6